

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5. 10. 1.>

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(제2조 관련)

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「통계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.

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농업, 임업 및 어업	A
광업	B
제조업	C
건설업	F
전기업	351
수도업	360
철도운송업	491
항공운송업	51
공영 우편업	611
중앙 은행	6411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	84
초등교육기관	851
중등교육기관	852
고등교육기관	853
특수학교,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	854
사회복지 서비스업	87
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	9022
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	9023
스포츠 서비스업	911
수상오락 서비스업	9123
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
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	9129
협회 및 단체	94
가구내 고용활동	97
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	98
국제 및 외국기관	99